

# 직렬(류) 직무기술서

선발단위	임용예정기관	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선발예정인원
<b>703</b>	해양수산부 (☎ 044-200-5073)	선박안전	해양수산주사보 (일반선박)	5명

<b>담당예정업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 업무 * 지방해양수산청 배치</li> <li>- 선박톤수 측정, 항만국통제(PSC) 점검, 선박안전관리체제(ISM) 심사 등</li> <li>-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·시행,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</li> </ul>
---------------	--

<b>필요 지식(역량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해사안전기본법」, 「해상교통안전법」, 「선박안전법」 등 선박안전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</li> <li>○ 선박 건조 및 선박 설계에 관한 지식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	---

※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																			
<b>응 시 요 건</b>	<b>관련분야: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</b>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에서 항해(또는 기관) 관련 학과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3급 해기사(항해사&lt;상선&gt; 또는 기관사)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<b>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</b> 근무한 경력(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)이 있는 자</li> <li>○ 대학이나 해양·수산계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(항해사&lt;상선&gt; 또는 기관사)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</li> <li>○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(항해사 &lt;상선&gt; 또는 기관사)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급 이상 해기사 면허 취득한 후 <b>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</b> 근무한 경력(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)이 있는 자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	<b>관련분야: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 업무</b>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계기술사,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</li> <li>-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<b>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</b>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-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<b>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</b>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<b>우대요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 이상인 자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토플 (TOEFL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토픽 (TOEIC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텡스 (TEPS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텔프 (G-TELP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플렉스 (FLEX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BT 8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9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8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7(level2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청각장애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9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3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2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0.8em; margin-top: 10px;">* 청각장애의 정도가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준 청각장애 23급)'이거나,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'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자</p>	구분	토플 (TOEFL)	토픽 (TOEIC)	텡스 (TEPS)	지텔프 (G-TELP)	플렉스 (FLEX)	일반	IBT 86	790	385	77(level2)	700	청각장애*	-	395	231	-	420
구분	토플 (TOEFL)	토픽 (TOEIC)	텡스 (TEPS)	지텔프 (G-TELP)	플렉스 (FLEX)														
일반	IBT 86	790	385	77(level2)	700														
청각장애*	-	395	231	-	420														

**자격증**

\*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별표8에 따른 자격증 및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97조에 따른 선박 검사관의 자격 요건 선정